

관세청, 2026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발표

- 총 2,705명이 응시해 560명 합격…합격률 20.7% 기록
- 외국인 근로자 12명도 보세사 시험 응시…2명 합격

관세청은 8월 12일(수) 「2026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56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 「관세법」(제164조부터 165조의5)에 따라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자격제로 운영)

지난 7월 4일(토) 실시된 2026년 보세사 시험에는 총 2,705명이 응시하였으며, 총 560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20.7%를 기록했다.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및 (사)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합격자 명단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알림·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 공고",
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www.kcla.kr) "공지사항"

보세사 자격증은 8월 20일(목)부터 우편으로 교부될 예정이며, 보세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한국관세물류협회의 각 지역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점, 최고 점수는 86.4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20·30대 연령층이 전체 응시자의 약 62%(1,687명), 전체 합격자의 약 71%(400명)를 차지하여 청년층의 보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2년 연령별 보세사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

(단위 : 명, %)

연령	응시자 수(A)		합격자 수(B)		합격률(B/A)	
	'25	'26	'25	'26	'25	'26
10대	1	-	-	-	0	0
20대	844	707	375	201	44.4	28.4
30대	1,167	980	377	199	32.3	20.3
40대	766	701	212	106	27.7	15.1
50대	298	271	96	46	32.2	17.0
60대 이상	59	46	13	8	22.0	17.4
합계	3,135	2,705	1,073	560	34.2	20.7

한편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세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다. 올해 보세사 시험에는 12명의 외국인이 응시하여 2명이 합격했다.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은 「관세법」 제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문서 또는 공증받은 진술서에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서 제출

보세사는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화물관리 전문 자격인으로(「관세법」 제164조), 무역량 및 보세화물 증가 추세에 따라 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으로써 대표적으로 보세판매장(일명 면세점)·보세창고·보세공장 등이 있음

이진희 통관국장은 “2025년 보세사 자격 취득자 1,073명 중 260명이 보세사로 근무하기 위해 (사)한국관세물류협회에 등록을 마쳐 자격증 취득이 실질적인 취업·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보세사 제도를 통해 통관물류·화물분야 전문가를 지속 육성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책임자	과 장 김 승 민 (042-481-7820)
		담당자	사무관 백 종 성 (042-481-7945)

□ 도입배경

- 무역량 급증에 따라 모든 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직접 관리에 한계가 있어, 보세구역 운영인에 의한 보세구역 자율관리 제도와 보세사 제도를 시행 ('81.12)

* 참고 : 관세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 보세사 자격시험

- (연혁) '88.7월 최초 실시, 올해 제33차
- (실시기관) (사)한국관세물류협회
- (시험과목) 총 5개
 - *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 (합격기준) 과목별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 (자격증 발급) 관세청장이 (사)한국관세물류협회를 통해 교부

□ 보세사 자격증의 등록

※ 관세법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③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기관) (사)한국관세물류협회*

* 관세법 제329조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보세사 등록업무권한을 위탁

- (등록신청) '입사예정 또는 재직확인 증명서' 첨부하여 신청
- (등록증 교부) (사)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관세법 제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후 신청인에게 교부(등기우편)